

재산등록(신고)기간 연장 신청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 즉시		
신청인 (등록 의무자)	성명	생년월일		전화번호 (휴대전화) ()		
	소속	직위		직급 등		
	주소					
신고서	공개 구분	[] 공개자 / [] 비공개자				
	등록기준일					
	등록의무 기한	. . . 까지				
연장신청 기간						
연장신청 사유				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

유의사항		
1.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등록기간을 연장 받으려고 할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 및 재산명을 적으십시오. 2. 등록의무기한은 등록기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. 3. 공개자는 최대 20일, 비공개자는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		
업무 처리절차		
신청서 작성·제출 (등록의무자)	➔	연장여부 결정 (헌법재판소사무처장)
	➔	연장여부 통보 (헌법재판소사무처장)